# 산업재산권의 종류

| 구 분 | 특 허 | 실용신안 | 의 장 | 상 표 |
|---|---|---|---|---|
| 정의 | 아직까지 없었던 물건 또는 방법을 최초로 발명한 것(대발명) | 이미 발명된 것을 개량해서 보다 편리하고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한 물품에 대한 고안 그 자체(소발명) | 물품의 형상 · 모양 · 액체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느끼게 하는 것 | 타인의 상품과 식별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기호 · 문자 · 도형이나 이들을 결합한 것 또는 이들과 색채와의 결합으로서 타인의 것과 명확히 구분되는 것 |
| 보기 | 벨이 전자를 응용하여 처음으로 전화기를 생각해 낸 것과 같은 발명 | 분리된 송수화기를 하나로 하여 편리하게 한 것과 같은 형상이나 구조 등에 관한 고안 | 탁상 전화기를 반구형이나 네모꼴로 한 것과 같이 물품의 외관에 대한 형상 · 모양 · 색채에 관한 디자인 | 전화기 제조회사가 자사 제품의 신용을 유지하기 위해 제품이나 포장 등에 표시하는 표장으로서의 상호 · 마크 등 |
| 존속 기간 | 설정 등록일 후 출원 일로부터 20년 | 설정 등록일 후 출원 일로부터 10년 (구법적용분은 15년) | 설정등록일로부터 15년 | 설정등록일로부터 10년 (10년마다 갱신가능, 반영구적 권리) |

### □ 특허권 등의 효력범위

속지주의 원칙이 적용됨에 따라 반드시 특허권 등을 획득하고자 하는 나라에 출원을 하여 각 국가별로 특허권 등을 취득하여야만 그 나라에서 독점 배타적 권리를 확보할 수 있음.